

韓國警察에 關한 行態學的 研究

李 植 變

第一章 序 文

第一節 韓國警察의 歷史的 背景

國家社會의 存立와 發展은 第1次의 으로 그 構成員으로서의 諸個人과 統治機關을 비롯한 社會集團의 平和롭고 均衡있는 秩序의 確立를 必要로 하는데 이어한 秩序가 社會體系 Social system 와 構成部分間의 自律의 合意 Concensus 와 統制에 따라 行해지지 못할 境遇에 權威있는 統治權力에 依한 秩序維持手段이 講究되어야 한다.

權威있는 統治權力의 秩序維持手段이 바로 警察 (police)⁽¹⁾이며 警察은 1次의 으로 統治機關에서 制定公布한 社會秩序로서의 法規範의 執行을 그 使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歷史의 으로 볼 때 警察이란 統治體制에 따르서 그 性格과 機能을 달리 하고 있다. 即

專制主義下에서는 警察이 約對君主의 支配體制를 確保하는手段으로 作用하여 約對主義國家의 確立을 為한 國家權力의手段으로서 警察이 利用되었다.⁽²⁾

產業革命以後, 이어한 近代的 約對國家가 새로 登場한 中產階層의 革命에 依해 봉과하고 그와 대치된 市民의 議會政治下에서는 自由放任의 原理에 따라 警察은 國政의 生命과 財產의 保護機能의 擔當

者로서 轉換되었다. 말하자면 無定量의 警察力에 限界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³⁾

20世紀의 소위 大衆民主政治⁽⁴⁾時代에 들어서면서 警察의 機能도 量의 으로 擴大되고 質의 으로 強化되게 되었다.

警察能은 夜警의 役割 뿐만 아니라 行政機能의 擴大에 따르는 社會, 經濟, 教育, 保健, 衛生, 交通等에 關한 諸政策과 法規의 保護를 위한 助長業務까지 擔當하는 동시에 犯罪의豫防斗檢舉, 處理등의 固有業務를 執行하게 되어 警察權의 擴大와 強化傾向을 出現시켰다.

한편, 韓國의 警察은 그 歷史的 背景이 126年前 (1838年) 李朝까지 소급된다.

그當時, 中央에는 捕盜廳, 地方에는 各道監司를 두고 社會秩序의 維持와 專制君主體制의 維持手段으로서 警察은 機能했다.⁽⁵⁾

韓國警察의 近代的인組織과 機能의 發揮는 1894年左右捕盜廳을 廢止하고 警務廳을 設置하여 職制를 改編한데서 부터 始作됐다.

清日戰爭이후 日本의 領事裁判權의 主張, 그리고 日本이 架設한 軍用通信網의 保護를 口實로 하여 日本警察과 憲兵의 韓國派遣와 地方配置가 이뤄져 韓國은 「日軍警察」과 韓國警察의 二元的組織을 갖게 되었다.

(1) 警察 police의 語源은 Latin語 politia에서 由來한 것으로 秩序있는理想的 狀態를 意味한다.

下中邦彥, 政治學辭典, 東京, 平凡社, 昭 29. p. 334.

(2) 极度로 官憲의 權力의 濫用이 있어 警察國家 (police state)라는 用語가 생겼다.

(3) 여기서 指摘된 警察權의 限界란 警察比例의 原則, 警察責任의 原則, 私生活自由의 原則을 内容으로 한다.

(4) 笠原一, 現代の政治力學, みすず書房東京 昭 37. pp. 46—50.

(5) i) 韓國警察制度史에 關해서는 玄圭柄, 韓國警察制度史, 民主警察研究會 서울 1955 參照.

ii) 職制는 捕盜大將을 首班으로 하고 그 밑에 從事官, 軍官, 書員, 軍士, 使命의 職階를 두었으며 이들의 非違는 司憲府에서 憲治하였다. 治安局, 韓國警察의 沿革, 서울, 1964. p. 12.

iii) 史的展開는 安甲澗 警察中立化的 問題點 行政大學院 學位論文 1964.

1905 年 警察顧問制에 依하여 韓國의 各級警察署에는 日本의 警察이 配置되어 實質的으로 警察指揮權이 日本에게 强占되었다. 1907 年의 소위 韓日議定에 依해서 制度上으로도 韓國의 警察은 統監府의 指揮監督下에 들어가 있다가 1910 年 總督府의 設置로 因해 完全히 그 獨立性이 상실된 것이다.

日帝統治下의 警察은 西歐의 이론바 「警察能國家」下에서의 性格으로서 韓國民의 強壓과 奴隸化政策의 手段으로서 機能하여 韓國民의 抵抗意識을 助成해 갔다. 말하자면, 韓國人의 自由와 權利의 保護가 아니라 植民地統治機關의 制定法規의 保護와 執行 그리고 韓國人의 自由와 權利를 侵害하는 非人道的인 權力手段으로 化하여 韓國人의 對 警察觀의 傳統을 造成하는 歷史的契機가 마련 되었다.

1945 年 解放되던 해 10 月에 美軍政廳이 總督府(警務局)와 代置되고, 12 月에는 「警察能組織」에 關한 命令으로一般國家行政에서 警察行政을 分離시키고 1946 年 機構와 職制改革을 斷行함으로서 日警의 殘存要素除去에 努力했다.

1948 年 9 月 大韓民國樹立과 同時に 韓國의 警察은 1907 年 이후 近 41 年간에 비로서 그 主體性을 回復하게 되어 오늘날의 韓國警察로 發足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도 살펴본바와 같이 韓國警察만이 지니는 特殊한 歷史性으로 因해 警察에 對한 傳統的인 非友好的關係를 短時日內에 拂拭할 수 없었고 特히 解放直後의 左翼系列과의 闘爭으로 因해서 戰鬪的인 權力部隊로서 認識이 남겨졌으며 그後 1950 年의 動亂과 1953 年 以後의 共匪討伐로 因한 戰鬪 및 助長行政의 直接擔當 등으로 警察本來의 固有職務이외의 軍事機能 行政機能까지 兼有 無理한 環境下에서 成長해 온 것이다.

특히 自由黨執權下의 韓國警察은 이어한 李朝日帝·動亂前後의 警察에 對한 傳統的인 非友好的態度와 警察이 固有의 自己機能을 充分히 發揮할 수 없었던 政治社會의 環境에 빠져서 自體의 違法行爲와 政權維持強化를 爲한手段化 더우기 政治와 行政에 있어서 不正 腐敗의 道具로 利用되었다는 歷史的汚點으로 因해서 劣率的인 警察行政의 確立을 期하기 어려운 狀況에 놓여 있었다.

1961 年의 5. 16 革命으로 上記한 諸阻害要因의

除去에 努力を 기우렸으나 1963 年末 까지의 憲政中斷과 過度한 助長行政의 賦課, 그리고 지나친 能率本位의 行政으로 말미암아 警察이 國民個個人의 自由와 權利保護面보다도 國策遂行에 偏重運營됨으로서 健全한 對民關係의 缺如現象을 招來시키고, 따라서 名實相符한 民主警察의 出現을 아직 實現시키지 못하고 있다.

第二節 韓國警察의 生態學的實態

社會의 發達에 따라 警察의 機能은 國民의 私的生活關係의 秩序維持뿐만 아니라 各種國家政策의 助長, 反社會의 犯罪의 事前豫防 및 事件處理 등 날로 擴大되는 傾向이 있다. 그 例로서

1965 年까지 韓國의 年平均事件增加率을 들어보면 刑事事件 16%, 即決 42.8% 少年保護事件의 29.4%의 增加相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같은 事件의 增加傾向에 對해 事件을 直接擔當하는 警察官의 全國的인 數字를 보면, 1950 年度 4,810 名, 1955 年度 47,250 名, 1960 年度 33,035 名, 1962 年度 29,910 名으로 減員되었다가 1963 年以後多少增加되어 1966 年度現在 39,325 名으로 增強되었으나 各種犯罪의 增加比率에 比해 固定 또는 不動傾向에 있다.

人口 對 警察官의 比率을 보드라도 1964 年末 人口 866 名當 警官 1 名의 比率로서 外國에 比해 警官 1 人當 150~300 名을 더勘當하고 있다.

裝備와 機材도 不足하고 또 老朽하여 大部分의 事件이 거의 人力에 依存하면서 허덕이고 있는 形便이다.

歲出額을 보더라도, 1967 年度 豫算에 警官 1 人當 報酬가 ₩8~9000에 不過하며 警察의 刑事事件當 搜查費는 ₩ 143.06 即決事件當 ₩ 8.53에 不過하다.

要컨대, 韓國警察은 激增하는 事件과 過多한 業務量에 對하여 過少한 報酬 過少한 業務執行費 그리고 過少한 人力으로 對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第三節 問題意識의 提起

警察이라는 行政組織이 正常的인 自己機能을 遂行하려면 組織成員의 第 1 次的欲求(衣食住)가 어느 程度는 充足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한 境遇, 集團이라는 行動體系構成部分인 個體로서의 下位體系(Sub-system)間

예 心理葛藤斗 欲求不滿에서 오는 이론과 防禦機制(Denfence mechanism)의 過多現象으로 有機的相互作用(interaction)을 期待할 수 없는 까닭이다.

더우기 警察行政의 性格이 對民奉仕機關으로서 對外的 對民接觸을 위주로 하는 行政組織인 까닭에 組織自體內의 非正常的相互作用이 民衆의 自由와 權利의 保護를 疏忽히 하거나 不當히 處理하거나 또는 侵權할 愛慮가 많기 때문이다.

正常的 對警察業務遂行을 爲한 또하나의 條件은 警察官의 社會的責任感 民主的價値觀⁽⁶⁾ 그리고 忠誠心을 들 수 있다.

셋째의 條件으로 들 수 있는 것은 民衆의 對警察態度과 할 수 있다.

民衆이 警察을 如何히 認識하고 接觸하느냐에 따라서 民衆과 警察의 相互作用의 類型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立場에서 論者는 第1章과 第2章에서 文獻을 通하여 主題와 民衆의 對警察意識을 다루었으며 第3章과 第4章에서는 Leadership 과 對民意識에 對한 意見調查를 大都市(서울東大門警察署)·中都市(京畿道水原警察署) 그리고 農村(京畿道廣州警察署)으로 나누어 計數化시켜 分析하였다.

第2章 民衆의 對警察意識

第1節 對警察意識分析의 意義

社會體系에 있어서 그 構成要員間의 相互作用이 秩序있고 均衡있는 關係가 되려면 下位體系인 構成要員은 忽論, 權威있는 權力機關과 權力作用의 對象集團間의 相互關係가 相互依存의이어야 한다.

警察能도 이 상의 命題를 빗어 낼 수는 없는 것이며 원활한 機能遂行을 爲해서는 警察과 國民의 態度가 相互友好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⁷⁾

그러나 警察은 法規를 執行하고 秩序維持를 위해必要할 때는 對民統制活動을 하는 까닭에 市民들의抵抗(resistance)⁽⁸⁾을 받게 되어 相互間의友好的關係樹立이 어렵게 된다.

相互間의友好的關係의樹立을 위해 警察도 努力

해야 할 것이지만 警察의一方的인 對民關係活動만으로는 所期의 成果를 期待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民衆의友好的인反應이 必須的인 要件이 된다.

따라서 警察의 對民關係가 어떤 態度하는 것은 第1次의으로 民衆의 輿論 即 民衆의 對警察意識 속에 나타난다고 보아야 하며 第2次의으로 警察官의 對民意識 속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韓國民의 對警察意識을 알아보기 위해 本論文에서는 서울特別市 警察局이 1966年 8月～9月에 實施한 市民輿論調查結果分析을 利用했다.

第2節 對警察意識의 實態分析

(1) 警察官에 對한 親密感에 對하여 應答者中 17%만이 親密感을 느낀다는 意見을 가지고 있을 뿐 나머지는 親密感을 느끼나 接觸을 까된다(57%), 親密感을 느낄 수 없다는 斷定的意見(25%)을 보여주어 韓國警察의 傳統的인 對民關係가 韓國警察의 獨特한 歷史的 性格으로 因해 아직도 改善되지 않았다는 事實을 보여주고 있다.

(2) 이와 같은 傾向은 警察에 對한 信賴度에도 나타나 있는데, 警察을 信賴한다는 意見이 全體의 16%, 信賴할 수 없다가 14% 너더지 66%가 中間의인 意見을 가지고 있다.

(3) 그러나 이와 같은 傳統的인 非友好的인 對民關係도 차츰 改善되는 傾向에 있다는 事實을 보여주는 것으로 警察活動에 對한 市民의 協助度를 들 수 있다. 全的으로 또는 可及的 協助하겠다는 意見이 98%나 되어 一般的으로 一般市民이 警察의 本來的使命을 認識하고 아래 積極的으로 參加하려는 傾向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4) 對民關係의 첫 契機다 할 수 있는 警察官의 活動에 對해 75%가 積極的인 友好的反應을 보여주고 있는데(이中 25%는 많이 改善되었다, 50%는多少改善되었다.) 이는 友好的對民關係樹立에 艱은展望을 해 준다고 볼 수 있다.

(5) 그러나 아직 滿足할段階는 아니며 特히署內 警察官의 應接態度에 있어서 아직도 26%가 귀

(6) 尹在豐, 韓國官僚制의 特徵, 學位論文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65.

(7) The International city managers association, municipal police administration, Institute for training in municipal administration, Chicago, Ill. 1961. p. 456.

(8) Ibid, p. 456.

참아 하는 態度를 보여 氣分이 나쁘다는 意見을 보여 주고 있다(귀참아 하는 態度의 原因은 第3章에서 究明된다).

(6) 이와같은 事實은 警察官의 紀觸에 對한 誓問에서도 나타나는데 舊態依然하다는 意見이 全體의 50%(이中 過去와 비슷하다 34%, 더 많아졌다 16%)를 占하고 있다.

第3者로서 民衆이 警察官의 士氣를 어떻게 보느냐에 對해 但只 14%만이 旺盛하다는 反應을 보인 것은 韓國警察官의 生理的 環境的要因이 얼마나 비참한 가를 間接的으로 나타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一般的으로 警察官지 땅자들은 物質的인所得보다도 權力的인, 눈에 보이지 않는所得에相當한 帥력을 느끼는 心理的 性向을 갖는 것이고 이 눈에보이지 않는所得(invisible income)의 尺度가 바로 警察官의 士氣(morale)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8) 한편, 警察官의 民衆에 對한 非友好的態度의 重大한 原因의 하나로 할 수 있는 警察業務의 過重性에 對해 全體의 71%(이中 非友好的 27%,多少過重하다가 44%)가 理解를 해 주고 있다.

(9) 또民弊一掃公正한 法執行을 警察信賴獲得의 緊要課題로 보고있는데 이는 警察官의 報酬水準의不合理性을 是正함으로서 達成할 수 있는 問題라고 본다(其他 課題로서 搜查의 科學化, 對民親切奉仕, 自體敎育訓練強化等의 順位를 놓고 있다).

結論의 으로, 韓國의 對警察意識은 根本의 으로 傳統的인 非友好的對民關係를 脫皮치 못하고 있으며 警察官의 業務 또는 警察官에 對한 理解가 增進되어가는 傾向에 있으나 根本의 警察官의 生理的環境的 要因에 對한 解決이 없는限 完全한 民主的對民關係의樹立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第3章 警察官의 行態에 미치는 生理的環境의 要因分析

第一節 分析의 意義

人間行動의 基本的動因은 生理發生的(biogenic) 또는 社會發生的(sociogenic)인 諸衝動(drive)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諸衝動의 充足過程으로서의 行動은 欲求

의 充足方法과 手段 그리고 解消如否에 따라서 그 樣相이 달라진다. 또한 人間의 行動過程에 있어서 樣相을 달리하는 變數(Variables)는 行動의 主體인個人의 Personality와 行動의 환경적狀況이라 할 수 있는 데 이中 Personality에 있어서는 特히 欲求充足의 方法과 不滿의 反應處理方法의 經驗의 指向인 態度(attitude)가 中心的인 變數로서 作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集團의 組織이라는 相互作用體系에 있어서 이른바 Leadership이라든가 對人的 相互作用 즉 集團의 對內外의 對人關係에 있어서의 對民意識도 또한 上記한 바와 같은 欲求態度 狀況이라는 變數間의 相關關係의 連關分析을 通해서 그 類型이라든가 一般的的傾向性이라는 命題를 導出할 수 있다고 본다.

警察能이라는 行政的集團組織에 있어서의 Leadership과 對民態度도 上記한 바의 基本의 見解를前提로 하여 接近分析이 가능할 때 警察이라는 集團에 關한 命題導出이 可能하다고 보아 本論文에서는 生理的 要因 및 環境的 要因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調査項目으로 設定하여 分析하였다.

- ① 扶養家族數과 生活費關係.
- ② 勤務時間과 休息睡眠時間.
- ③ 住宅과 食事關係.
- ④ 男女間의 性關係.
- ⑤ 婚人과의 人間關係.
- ⑥ 經費不足關係.
- ⑦ mass media 利用關係.
- ⑧ 經濟生活의 將來性.

第2節 實態分析

1. 扶養家族數.

3名以下의 家族을 扶養하고 있는 사람은 調査對象警察官의 24.3%이고 나머지 75.7%는 4名以上的 家族을 扶養하고 있다. 特히 7名以上을 扶養해야하는 大家族의 警察官이 全體의 22.7%나 占하고 있다.

그러나 地域別 實態에 있어서는 大都市인 東大門의 境遇 15.3% 만이 大家族에 屬해 있다.

全體의 으로 보아, 韓國의 大部分이 아직도 前近代의 生活態度나 生活慣習에서 벗어나지 못해 大家族의 굴레에서 여러名의 食口를 扶養해야 할 立

場에 있는 것과 같이 警察官의 境遇도 이러한 實態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을을 알 수 있다. 產業發達이 未熟한 段階에서 大部分의 家族이 職場이

없다고 生覺하면 警察官의 生活이 얼마나 紳士的인가는 再言을 必要치 않는다.

扶養家族數

地域別	東大門	水原	廣州
2~3名	38	25.3	22.9
4~5名	51	34	17.4
5~6名	38	25.3	37.2
7~8名	23	15.3	32.1
計	15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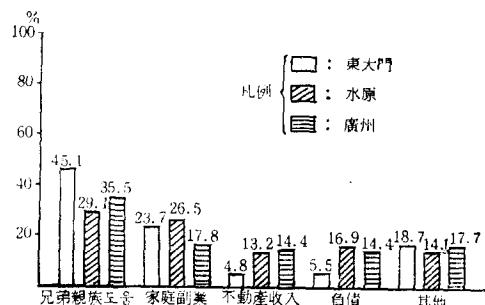
2. 生活費不足額

서울의 境遇, 月 7,000 원以上이 不足한 사람이 全體의 30.7%를 占하여 生活費의 極甚한 不足相을 示顯해 주고 있다. 地方으로 내려갈 수록 生活費不足은 줄어 들고 있다.

이러한 事實은 中央 中小都市 그리고 農村等 地域에 따라 支出構造와 支出額이 相異해 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充當方法으로 弟兄 또는 親族의 支援이 中央이나 地方이나를 莫論하고 가장 많은 比率을 占하고 있다.

特記해야 할 事實은 生活費不足充當으로서 負債가相當數를 차지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東大門 5.5% 水原 16.9%, 廣州 14.4%) 地方으로 갈 수록 이의 比率이 높아지고 있는 데 近者 자주 發生되는 警察官의 自殺事件等 事故發生의 한 原因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警察官의 不足한 故酬는 國家에서 充當해 줄 수 있는合理的인 故酬水準의 再策定이 切實하다고 볼 수 있다.

生活費 不足額充當 方法



4. 日平均勤務時間

不足한 故酬水準下에서 警察官의 業務는 한마디로 말하여 「지나치다」라는 말로서 表示할 수 밖에 없다.

正常的인 勤務時間인 8時間의 勤務는 거의 없는 形便이며 보통 하루 10時間以上의 激務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勤務時間

地域別	東大門	水原	廣州
8시간	1	0.7	1.8
8~9	6	4	6.4
10~11	20	14.0	24
12~13	17	11.0	14.8
14~15	12	8.0	12.9
16~17	35	22	9.3
18以上	61	40.3	30.5
計	150	100%	100%

심지어 18時間以上, 근무하는 警察官이 東大門 46.3%, 水原 30.5%, 廣州 30.9%이나 되는 것은 근무 自體가 高度의 肉體 및 精神的 努力を 必要로 한다는 事實과 結付하여 重大한 社會問題를 提起한다고 볼 수 있다.

5. 1日 平均睡眠時間

이와같은 事實은 睡眠時間에서도 잘 나타나 있

다. 正常의으로 8時間以上을 睡眠하는 사람은 大

都市와 中小都市에서는 거의 없고(東大門 2%, 水原 3.7%, 시골인 廣州의 경우에 겨우 15.5%를 보여 주고 있다.)

심지어 最少限의 睡眠時間이라 할 수 있는 4時間休息이 東大門 29.3%, 水原 17.6%, 廣州 15.6%나 되는 것은 過激한 業務量의 生生한 證據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過激한 業務量은 一日平均 外食數月

1日 平均 睡眠時間

地域別	東 大 門	水 原	廣 州
4 시간	44	29.3	17.6
5 시간	34	22.2	13.9
6 시간	48	32	49
7 시간	21	14	15.7
8 시간	3	2	3.7
計	150	100%	96
		108	100%

間休息平均日數等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6. 男女(性)關係

薄俸과 激務에 시달리는 警察官의 夫婦關係를 보면, 正常의인 關係(圓滿한 便과 普通이다)가 東大門 70%, 水原 83.4%, 廣州 70.1%를 보여주어 평균 74%가 正常의인 生活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問題는 나머지 26%이다. 都市, 農村 모두 비슷한 比率을 보여 주고 있는데, 월만치 못한 關係(不滿)이다. 意慾이 生기지 않는다는 健全한 對民關係樹

立에 致命的일 수 있다. 왜냐하면, 圓滿치 못한 性關係는 자칫하면 人間을 「공격지향」형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權威의이며 공격적인 사람과의 人間關係가 원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圓滿치 못한 性關係의 原因이 過激한 勤務에서 오는 것을 生覺하면 (意慾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피로에서 나오는 結果이며 東大門의 경우 22.7%나 占하고 있다) 韓國警察의 對民關係의 基礎는 根本의인 生理的 環境의 要因의 解決없이는 不可能하다는 結論이 나온다.

男 女(性)關 係

地 域 別	東 大 門	水 原	廣 州
圓滿한 便	34	22.7	32
不滿이다	11	7.3	9
普通이다	71	47.3	37
意慾이 生기지 않는다	34	22.7	15
計	150	100%	93
		100%	84
			100%

7. 業務執行上 必要한豫算不足의 补充方法.

刑事案件當 搜查費가 ₩ 143.06, 即決事件當 ₩ 8.53(1967年度 費出豫算에서)인 現實에서 業務執行上 必要한 經費가 어떤 樣相으로 补充되나를 보자.

民弊의 다른 表現이라 할 수 있는 「外部友人이 充當해 준다」가 都市, 農村을 莫論하고 많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다.(東大門 56.7%, 水原 35.1%, 廣州 39.7%) 심지어 家庭에서 까지 가져다 쓰는 奇現象을 보여주고 있다.(東大門 19.1%, 水原

豫算不足의 補充方法

地 域 別	東 大 門	水 原	廣 州
上官이 充當해 준다	13	9.2	19
部下가 充當해 준다	4	2.8	1
同僚가 充當해 준다	17	12.1	6
外部의 友人 充當해 준다	80	56.7	33
家庭에서 充當해 준다	27	19.1	35
計	141	100%	94
			100%
			73
			100%

37.2%, 廣州 1.4%)

이와 같은 狀態에서 民主的搜查·科學的搜查를 主張하는 것 自體가 우스꽝 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8. 消息源

勤務에 着기는 警察官의 消息源은 視聽覺을 通한 「오락」的 性質을 띤 라디오 T.V 보다는 時間이나

空間的 制限이 없는 新聞, 雜誌, 書籍이 大部分을 占有하고 있다. 이中 特히 新聞이 重要한 役割을 한다. (東大門 65.3%, 水原 65.1%, 廣州 70.8%)

이와 같은 事實은 都市로 올 수록 茲하다. (東大門의 境遇 라티오, T.V의 消息源이 全無이며 水原 17.4%, 廣州 11.43%를 보여주고 있다.)

消 息 源

地 域 別	東 大 門	水 原	廣 州
新聞	98	65.3	71
雜誌	32	21.3	8
書籍	19	12.6	8
라디오	—	—	19
—	—	—	17.4
同窓友人	—	—	3
其他	1	0.7	—
計	150	100%	109
			100%
			96
			100%

9. 警察官의 살림살이

이와같이 惡條件에 있는 韓國警察官의 앞으로의 살림살이에 對한 見解를 보면 23%만이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見解를 가지고 있을 뿐 나머지 77%는 모두 悲觀的 見解를 가지고 있다.

이와같은 事實은 警察官의 勤務態度 또는 士氣마

는 觀點에서 보아 커다란 社會問題를 提起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將來自己의 生活에 對해 自信感을 갖지 못하고서는 正常의이며 着實한 勤務를 할 수 없게 되며, 따라서 社會全體의健全한 對民關係의樹立도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警察官의 앞으로의 살림살이

地 域 別	東 大 門	水 原	廣 州
나아지리라 生覺한다	34	28.2	23
못해지리라 生覺한다	12	8	26
그저 그럴 것이다	63	42	23
뭐라고 말할 수 없다	41	27.3	19
計	150	100%	91
			100%
			93
			100%

以上에서 韓國警察官의 基本的인 生理的 環境的因素을 分析해 보았다. 한마디로 말하여 韓國의 警察官은 「薄俸과 激務」속에서 「피로」에 지쳐 있으며 將來에 對한 不安全感에 사로잡혀 正常의 生活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이로닉」하게도 國民의 自由와 權利 財產을 保護할 使命을 지니고 充實히 業務를 遂行하는 警察官이 自身의 基本의 人間의 權利는 무참히 희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現實은 하루바삐 시정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健全한 對民關係를樹立하고 警察에 對한 民衆의 尊敬을 獲得하여 韓國의 政治體系를 民主化시키는 捷徑이라 生覺된다.

第4章 警察 Leadership의 實態

第1節 Leadership 分析의 意義

一般的으로 Leadership은 指揮者가 被指揮者로부터 “正當한 權力” 다시 말하면 “權威”를 認定받을 때 認定되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한 指揮者가 그의 集團構成員에게 주는 命令이 構成員에게 容納되고 그 集團內에서 그의 活動을 統制하면 그 命令은 權威를 갖게된다.

被指揮者들이 指揮者를 받드는 것은 Leadership에 正當性을 認定하기 때문이다. Leadership의 正當性에 關해서 最初의 考察한 한 사람은 M. Weffer이다. 그는 Leadership이 갖는 權威에 따라 正當性의 類型을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型은 Leader의非凡한 個人的 ability를 認定하는 것이다,

둘째型은 傳統的인 것이며 그 指揮者에게 恒常追從해 왔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느끼는 型이며,

셋째型은 被指揮者가 認定하는 法規則에 따라서 指導의 位置를 占有했기 때문에 그 Leadership을 正當하다고 보는 것이다.

H. Gerth 및 C.W. Mill에 依하면 權威에는 다음의 세 가지 主要機能이 있다고 한다.

첫째는 權力의 表示이며.

둘째는 權力의 正當化.

셋째는 決定權을 行使하는 것이라고 한다.

如何든, Leadership이 어떤 社會의 人 關聯性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가를 살펴보는 것이 Leadership의 正當한 把握을 위해서는 繫要한 것이다.

Leadership의 正當한 把握을 위해서는 繫要한 것이다.

Leadership의 役割은 그가 屬하고 있는 集團에 따라서 다르며 Leader의 型도 團體의 目標構造의 特性, 非公式의 人間關係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또 構成員들의 image에도 크게 依存하는 것이다.

이러한 要因들은 社會條件의 變動에 따라서 달라지는 만큼 이러한 要因을 靜態的側面에서 뿐만 아니라 動態的側面에서도 分析해야 한다.

이와같은 視點에서 本章에서는 韓國警察의 Leadership의 實態를 分析해 볼까한다.

第2節 Leadership의 實態分析

1. 貴官은 部下들이 貴官의 命令과 指示대로 응집이느냐에 대해

警查以上의 調査對象者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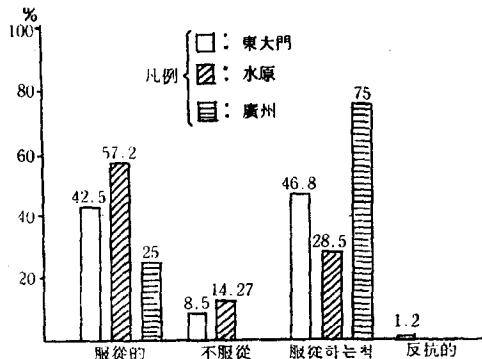
全體의 으로 約 50%가 「服從하는 척 하는 境遇가 많은 것 같다」는 意見을 보여주고 있다 (東大門 46.8%, 水原 28.5%, 廣州 75%).

命令統一이 生命이라 할 수 있는 警察行政에서 「잘 服從하는 便이라고 生覺한다」는 意見이 東大門 42.5% 水原 57.2%, 廣州 25%를 占有하고 있다.

이와같은 事實은 韓國의 Leadership의 限界를 보여준다고 生覺된다.

왜냐하면 上官에게 服從하는 척하는 態度는 유교적 因習에 由て 社會化過程이 傳統的 權威의 人 社會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類型이기 때문이다.

貴官은 部下들이 貴官의 命令과 指示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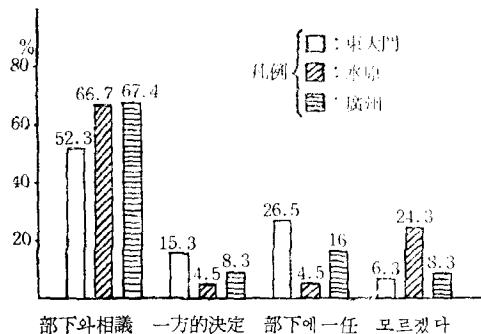
(2) 다음에 指揮하는 立場에 있는 警察官의 部下에 對한 態度를 살펴보면,

于先, 部下統率의 가장 效果的인 方法으로서 「일

일이 部下와 相議하는 民主的態度가 가장 높은 數를 占하고 있다.(東大門 52.3%, 水原 66.7%, 廣州 67.4%)

그러나 權威의 性向을 갖는 指揮者(一方의 으로 決定을 내리고 그것을 敢行시키는 方法이라고 生覺하는 指揮者)도相當比率 殘存해 있으며(東大門 15.3%, 水原 4.5%, 廣州 8.3%) 特히 Leadership 類型中 가장 나쁘다고 할 수 있는 自由放任型도 相

部下統率에 있어 가장 効果의인 方法은?



當程度 있음을 알 수 있다.(東大門 26.5%, 水原 4.5%, 廣州 16%)

더우기 指揮方法에 있어서 어느것이 좋은지 조차 모르는 者의 數가相當數 있다는 事實은 警察內部의 健實한 Leadership 을 為해 시급히 是正되어야 할 것이다.

3. 前述한 警察官의 生理的 環境的 要因分析에서 도 나타난 韓國警察官의 實態에 對해 指揮官들이 어느程度 理解를 하며 認識하는가를 알아 볼 수 있는 設問 「部下統率의 가장 큰 隘路」에 對해 中央이나 地方이나를 莫論하고 大部分이 過激한 業務量을 첫째로 꼽고 있다.

다음이 經費의 不足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特記해야 할 事實은 大都市인 東大門署의 境遇, 部下의 政治的인 面(5.6%)이 隘路의 要因으로 나타나 있다는 事實이다. 이와 같은 現象은 水原이나 廣州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데, 이것은 大都市 警察이 갖는 特有의 現象이 아닌가 生覺된다.

要컨대, 部下들의 第1次의 生理的 基本欲求의 不充足이 가장 큰 統率의 隘路라는데 거의 모두 意見의 一致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이와 같은 事實은 部下의 事故原因에 對한 設問에서도 나타나 있다).

部下統率의 隘路는?

地域 區分	東 大 門	水 原	廣 州
部下의 不足한 實務知識	—	4	1
部下의 性格	1	2.8	1
〃 영향부족	1	2.8	—
〃 教養不足	—	2	9.5
過多한 業務量	31	61.8	6
經費不足	13	27	5
部下의 政治的 面	2	5.6	—
計	48	100%	13
		21	100%

4. 部下의 官紀確立의 가장 効果의인 方法으로서는

部下의 厚生對策을 가장 主要한 手段으로 看做하고 있다.(東大門 60%, 水原 52.6%, 廣州 41.7%)

다음에 法規 및 實務教育 教養教育實施 監察強化가 비슷한 比率로 나타나 있다.

5. 한편 部下가 生覺하는 上官의 理想的인 型으로서는 地域에 關係없이 대부분(東大門 79.4%, 水原 62.3%, 廣州 79.3%)이 民主的인 指揮者를 願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地方으로 내려갈 수록 엄한 官僚型에 對해 選好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6. 上官不信의 理由로서 人事處理의 不當性을 모

官紀確立의 가장 効果的 方法

區分	地域別	東大門	水原	廣州	備考
法規 및 實務教育	5	11.1	4	21.0	1
教養教育實施 (경찰윤리관)	6	13.4	3	15.9	3
監察強化 (豫防指導)	5	11.1	2	10.5	—
團束 (特別官紀)	2	4.4	—	—	3
厚生對策	27	60	10	52.6	5
計	45	100%	19	100%	12
					100%

上官의 理想型

區分	地域別	東大門	水原	廣州	備考
明暫한 頭腦를 가진 엄한 官僚型	8	5.2	13	21.3	6
部下와 相議를 잘하는 温和한 仁慈性	117	79.4	38	62.3	50
部下를 믿고 모든것을 部下에게 委任하는 委任型	23	15.4	10	16.4	7
計	148	100%	61	100%	63
					100%

두 첫째로서 들고 있다(東大門 35.3%, 水原 33.5% 廣州 48.0%)

그原因은 人事行政이라는 制度上의 矛盾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前章에서 살펴본 警察官의 備給水準의 非合理性에서 오는 生活費의 不足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生覺한다.

事實 봉급수준에 餘有가 있었던 시기에는 大部分의 警察官이 外勤보다는 内勤을 選好했던 것이다.

分析結果 나타난 「人事上不當한處理」는 이와는 反對로 内勤에서 外勤으로 轉換하려는 努力에 對한挫折에서 나타난 것이다. 對民接觸이 많이 있는 外勤이 生活費不足의 手段이 容易해 지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觀點에서 보더라도 警察官의 備給水準의 適正化는健全한 對民關係의 確石일뿐만 아니라 健全하여 民主的 上下關係의 基礎임을 알아야 한다.

上官不信의 原因

區分	地域別	東大門	水原	廣州	備考
業務處理能力의 不足	37	27.0	20	27.7	14
教養不足 (教育, 性格)	31	22.5	17	23.6	5
不當한 事件請託	9	6.5	5	6.9	10
不正收入	7	5.1	6	8.3	—
不當한 人事處理	48	35.3	24	33.5	27
職務怠慢	5	36	—	—	—
計	137	100%	72	100%	56
					100%

要컨대, 韓國警察의 Leadership에 있어서 全體의 으로 보아 「民主化」를 指向하고 있으나 아직도 傳統的 權威的 Leadership이 殘存해 있으며 特히 部下의 上官에 對한 不信의 原因이 基本의 인 生理的 欲求와 結付되어 있다는 事實이다.

第5章 對民意識의 實態

第1節 對民意識分析의 意義

民主主義의 傳統이 아직 뿌리를 박지 못하여 民主主義의 生活이 體質化되기를 못한데다가 韓國國

民의 非友好的인 對警察觀이 植民地統治下에서 이
미 形成되어 있었고 그 外에 急激한 社會變動에 따
르는 社會構造 그리고 經濟構造의 變化 그리고 強
力한 政府의 行政的指導로 인해서 警察業務의 過重
은 先進諸國에 비해 對民關係 確立에 적지 않은 問題
點을 配포하고 있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警察官의 對民意識이 어떤
가를 究明하여 相互態度의 相互關聯性을 抽出評價
할까 한다.

第2節 對民意識의 實態分析

① 一般市民이 警察官을 어떻게 認識하고 있다고
生覺하느냐는 質問에 對해 「法의 執行者이나 弱者
에게는 強하고, 金力과 權力에 屈하는 者로서 認識
한다는 意見을 많이 가지고 있다 (東大門 40.4%,
水原 29.30%, 廣州 43.5%).

一般市民이 警察官을 어떻게 認識하고 있다고 生覺하는가?

區 分	地 域 別				備 考
	東 大 門	水 原	廣 州		
善良한 市民의 保護者로서 認識하고 있다고 生 覺한다	26	17.7	19	25.3	18 28.8
法의 執行者이나 弱者에게는 強하고 金力과 權力에 는 屈하는 者로서 認識하고 있다고 生覺한다	59	40.4	22	29.3	27 43.5
公正한 法의 執行者로서 認識하고 있다고 生覺 한다	21	14.3	6	8	7 11.2
賤한 職業과 야비한 人格의 所有者로서 認識하 고 있다고 生覺한다	40	27.3	28	37.3	10 16.1
計	146	100%	75	100%	62 100%

② 反面 警察官이 보는 市民의 態度評價를 보면,
約過半數가 市民의 違法精神이 없는 便이지만 水
準은 그래도 向上되고 있다는 生覺을 가지고 있다.
地方으로 대여갈수록 市民의 違法精神에 對해 회

至「賤한 職業과 야비한 人格의 所有者로서 認識
하고 있다」도相當한 比率을 占하여 全體의 으로 一
般의 警察에 對한 態度가 大端히 非友好的이라
는데 意見의 一致를 보고 있는 것 같다(東大門
67.7%, 水原 66.6%, 廣州 44.9%).

이와같은 事實은 뒤집어 生覺하면 警察官의 對警
察觀이라고도 生覺할 수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본다면 自身의 職業에 對한 一
般의 認識이 나쁘다는 生覺을 하면서, 薄作에 초운
리고 激務에 시달리면서 自己의 職務에 充實할 수
있다는 것 自體가 하나의 神話가 아닐 수 없다. 이
러한 神話위에 民主的 對民關係의 樹立을 期待한다
는 것은 또 하나의 神話가 創造되기를 기다리는 心
情이나 다를 바 없다고 生覺한다.

一般市民이 警察官을 어떻게 認識하고 있다고 生覺하는가?

의를 나타내는 것은 地方으로 대여갈수록 Leadership
의 理想型으로서 權威의 官僚型을 選好했던 事實
과 關聯하여 對民態度의 權威的形成을 不可避하게
한 것으로 生覺된다.

市民의 違法精神에 對하여

區 分	地 域 別				備 考
	東 大 門	水 原	廣 州		
水準이 높고 칠 지킨다	8	5.3	3	3.9	4 12.5
水準이 아주 낮고 不法을 예사로 여긴다	27	18	26	34.2	11 34.3
違法精神이라고는 터끌만치도 없다	14	9.3	11	14.4	4 12.5
그래도 水準이 向上되고 있다	100	66.7	36	42.6	13 40.6
計	149	100%	76	100%	32 100%

③ 警察官이 無力한 피의자를 對할 때 被疑者의 人權이 尊重되느냐 하는 質問에 對해 大都市(58.%) 및 中少都市(50.6%)에서는 懷疑를 나타내고 있다.

그中에는 全的으로 人權이 無視되고 있다고 본다는 意見도相當數(東大門 9.3%, 水原 7.3%, 廣州 6.1%) 存在한다.

警察官이 無力한 被疑者를 對할 때

區 分	地 域 別	東 大 門		水 原		廣 州		備 考
		東 大 門	水 原	廣 州	備 考			
그 被疑者가 充分히 人權을 尊重되고 있다고 본다		22	15.8	18	23.4	18	27.7	
境遇에 따라서는 人權이 尊重되지 않는다고 본다		82	58.8	39	50.6	19	29.2	
全的으로 人權이 無視되고 있다고 본다		13	9.3	1	1.3	4	6.1	
普通程度이다		22	15.8	19	24.7	24	36.9	
計		139	100%	77	100%	65	100%	

④ 法私序와 人權에 關해서

法보다 人權을 尊重해야 된다고 보는 警察官이 많은 것이 特異하다(東大門 27.2%, 水原 24.3%, 廣州 30.9%).

權力이라는 것은 生理的으로 最大限의 行使를 願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恒常 濫用될 危險性을 内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法의 執行者로서의 警察이 法보다 人權을 尊重해야 한다는 意見을 갖는 것이 얼핏 奇異하게 生覺될지 모르나 最少限의 범위에서 最大의 人權을 尊重하면서, 社會

秩序를 維持해야 한다는 生覺은 民主的 法運營面에서 좋은 傾向으로 生覺된다.

大都市인 東大門署의 境遇에 「둘다 同一하게 尊重해야 된다」가 53.9%로서 가장 많고 다음이 人權을 더욱 尊重해야 한다가 27.2%, 法秩序의 尊重이 14.7%로 나와있는데 比해 農村인 廣州의 境遇法秩序 尊重과 人權 尊重이 同一하게 30.9%로서 나타나고 「둘다 同一하게 尊重해야」한다는 意見이 29.6%로서 大都市에 比해 약간 떨어진 것이 눈에 띈다.

法秩序와 人權에 對한 價值評價

區 分	地 域 別	東 大 門		水 原		廣 州		備 考
		東 大 門	水 原	廣 州	備 考			
法秩序를 보다 尊重해야 한다고 본다		21	14.7	13	17.5	21	30.9	
人權을 더 尊重해야 한다고 본다		40	27.2	18	24.3	21	30.9	
둘다 同一하게 尊重해야 된다고 본다		80	53.9	37	50	20	29.6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8	6	6	8.1	6	8.8	
計		149	100%	74	100%	68	100%	

要컨대 韓國警察官의 對民意識은 一般市民의 對警察에 對한 意識과 마찬가지로 相互不信속에서 원만한 關係를樹立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은 非正常的인 對民關係의 根本의 原因

은前述한 바와 같은 韓國警察의 歷史的特性에도 起因하지만 가장 重要한 것은 警察官의 基本의 第1次的 生理的欲求가 充足되지 못한데 있다고 본다.

第7章 結論

以上의 分析結果 大略 다음과 같은 結論에 到達했다.

1. 于先 生態學的인 側面에 있어

첫째) 韓國警察은 經濟成長率과 人口成長率을 上廻하는 社會犯罪와 不正의 增加率에 比해 形便敘는 裝備와 機材로서 거의 全的으로 事件處理를 人力에 依存하고 있으나 人力自體가 不足한 狀態에 있다.

둘째) 社會構成員의 行態가 아직도 近代化되지 못한 點이 많아 不安定하여 價值葛藤下에 놓여있다.

셋째) 警察에 對한 一般의 意識이 그 歷史的 特性(殖民地警察, 自由黨의 私兵化) 때문에 그릇되게 形成되어 왔다.

넷째) 警察官 1人當 人口比가 높고 過度한 事件發生率로 因해 人力不足과 激務에 시달리고 있다.

다섯째) 物價指數上昇과 薄俸으로 因해 大部分의 警察官이 生活苦에 시달리고 있으며 따라서 健全한 精神力과 奉仕意慾을 缺하고 있다.

여섯째) 上下官의 階序的 心理關係가 弛緩되어 있으며 相互不信의 態度의 潛在性으로 因해서 健全한 指揮統率과 監督體系의 效率의in 違行이 阻害되고 있다.

2. 一般市民의 對警察態度를 보면

韓國人의 過半數以上이 警察에 對해서 濱極의in 協力 態度를 가지고 있으며 警察官에의 接近을 꺼리고 있었다.

3. 警察의 一般市民에 對한 態度를 보면

첫째) 市民의 違法精神이一般的으로 向上되고 있다고 보나 權力과 金力이 없는 民衆에 對해서 人權을 尊重하지 않는 傾向이 있다.

둘째) 警察自身이 民衆으로 부터 不信을 받고 있다고 生覺하고 있다.

셋째) 警察官의 執務法規에 對한 認識이 낫다.

4. 다음에 Leadership의 實態를 들어보면

첫째) 上官들은一般的으로 部下들이 服從하고 있다고 보나 그 服從의 誠實性을 缺餘하고 있다고 본다.

둘째) 그려면서도 上官들은 指揮統率의 方法으로서 權威의in 態度보다는 民主的in 統率方法을 더

選好하고 있다.

셋째) 上官들은 部下들의 事故原因으로서 生活苦를 가장 큰 原因으로 生覺하며 同시에 官紀確立의 最善의 方案은 部下의 生活安定이라는 意見을 가지고 있다.

以上的 것을 綜合해 보건데 韓國에 있어서 警察組織의 Leadership은 部下와 上官들의 物質과 金錢置重行態로 因해서 많은 阻害를 받고 있다.

넷째) 部下들은一般的으로 民主的인 上官을 그들의 理想型으로 生覺하고 있다.

다섯째) 上官에 對한 不信의 原因으로서 人事關係의 不公定性을 들고 있는 바 그 根本的原因은 生活費의 充當을 為한 對民接觸이 많은 部署에로의 轉出過程에서 나타난다.

5. 끝으로, 警察官의 士氣問題에 關해서 보면

첫째) 警察生活의 將來에 對해서 짙은 懷意心과 不安을 가지고 있으며 機會만 있으면 轉職할 意思를 가지고 있다.

둘째) 警察官은一般的으로 그의 勞苦에 對해 上官으로부터 認定을 받고 있다.

셋째) 警察官들은一般的으로 上官에 依해 參與感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現象은 地方보다 서울의 境遇가 더 強하다.

6. 以上的 諸特性으로 因해서 韓國의 警察은 아직 民衆과의 社會의距離가相當히 있으며 이들의充分한 理解와 善意의 協力의in 態度를 確保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警察官自身들은 그 原因을充分히 認識하고 있는 것 같으며 그와 같은 責任이 歷史的 社會的制度의 및 經濟的inade도 있겠으나自己自身들의 執務行態에도 一端의 責任이 있다는 것을 自覺하고 있다.

이와 같은 警察官의 行態는 對內적으로는 上官이나 部下 그리고 同僚間에 있어서 바람직한 諸關係를 阻害함은勿論, 對外의in 執務面에 있어서도 民衆이 非難하는 行爲를 癡來케 되는 것이다.

이에 對해 根本的 對策을 講究하지 못하는 境遇, 警察은 「民衆의 保護者」인 동시에 「民衆을 亂暴히 하는 者」로서의 非難을 免하기 어려울 것이며 만일 이들에게 餘他의 要因을 無視하고 精神的in 姿勢만을 強調하게 되는 境遇 警察은自身的 權利를 主張

할 수 있는 國民의 하나이면서도 自身의 犠牲을 強要當하는 「病든 警察」이 되고 말 것이다.

韓國은 점차 政治 經濟面에서 發展을 指向하고 있다. 이런 發展은 社會의 犯罪量 減少시킬 것이며 國民生活의 漸進的 安定화와 社會意識의 向上을 通해 民衆의 對 警察態度도 改善될 것이라 生覺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警察職務의 法律的 限定化와 警察官의 世代交替 質的向上 合理的募集制度의 確立와 人事管理의 改善, 警察豫算의 擴大에 따르는 處遇改善과 아울러 對民關係의 合理的改善活動의 實現等을 前提로 해서만 期待可能한 것이다.

끝으로 위와같은 諸發展 效果에서 오는 結果는 對內的으로 警察官의 人力과 業務量의 均衡調和, 그리고 肉體的 精神的健康을 유지할 수 있는 勤務條件의 確保를 通해 上官과 部下間의 健全한 人間關係와 Leadership 그리고 健全한 對民關係의 確立이 비로서 期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같은 바람직한 警察의 모습은 누가 주는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警察自體의 改善과 發展을 위한 努力を 通해서 얻어 질 수 있는 것이라 보아 이에 對한 專門的이고 科學的인 政策의 研究와 그의 實踐이 要請되는 것이다.